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51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문진석・이기헌・천준호

한정애 · 장종태 · 이연희

양문석 • 김문수 • 진성준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 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 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 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삭 제>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 의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 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 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 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 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 조, 제34조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 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 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 | <삭 제> 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 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 른 유효기간 중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개정규정 을 적용한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삭 제>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 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 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 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삭 제>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 10부터 제40조의 17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